

한미 FTA 독소조항

12

완벽정리

래칫조항 (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)

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
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.
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**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
없게 하는 조항이다.**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
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.

〈 예 〉 -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
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

-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
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

-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
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
수 없음

- 전기, 가스,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
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

-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
되돌릴 수 없음.

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

(Negative List)

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
(포지티브방식-Positive)이 아니라
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.
따라서 **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
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.**

〈 예 〉 - 온갖 도박장, 섹스산업, 피라미드판매업 등
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
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.

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

(Future MFN Treatment)

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**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**이다.

〈 예 〉 -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,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,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.

투자자 – 국가제소권 (ISD)

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
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
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.

**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
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.**

(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
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)

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
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
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
독소조항이다.

〈 예 〉 –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
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

-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
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
-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
논의조차 하지 않음
-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, 평등권,
사회권이 무너짐
-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
사실상 포기하게 됨

비위반 제소

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
세금, 보조금,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
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
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
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
조항이다.

〈 예 〉 -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
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
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.
-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
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.

정부의 입증 책임 (necessity test)

국가의 정책, 규정 등 상대 국가는
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
'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'을 지는 조항이다.

< 예 > -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
반대여론 같은 경우,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
일임
-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

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

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**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.**

〈 예 〉 -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(미국은 한국과 정반대)

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

-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
-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

서비스 비설립권 인정

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
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.
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
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.
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
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
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.

〈 예 〉 -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“FTA
이행법” 을 만들었음: 이법에서 “미국법률에
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
미국인에게 무효다” 라고 선언했음(미국에서는 FTA가
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)
-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(30
여개)을 고치려고 함(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
주장함)

공기업 완전민영화 &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

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
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
맛 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.

〈 예 〉 - 의료보험공단, 한전, 석유공사, 농수산물
유통공사, 주택공사, 수자원공사, 토지공사, 도로공사,
KBS, 중소기업은행, 도시가스, 수도공사, 우체국,
주택공사, 지하철공사, 철도공사, 국민연금, 공무원
연금 등 :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
될 가능성이 농후함.

- 수도요금, 전기료, 지하철요금, 가스요금, 의료보험료
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

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

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
한국금융시장이 **국제투기자본의
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.**

〈 예 〉 -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
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.

-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% 소유할
수 있게 됨

-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
폐부도를 맞게 됨

-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

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(Trips+)

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
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.

〈 예 〉 -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
카피약사용 불가능
-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
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(700\$)의 약값을
지출함(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\$지출)
- 카페, 블로그, 개인 홈페이지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
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

스냅백 조항 (snapback)

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.

〈 예 〉 -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'막장'으로 내몰리게 됨

OUT FTA!

논쟁이 아닌 **현실**이며
이념이 아닌 **생존**이며
세계화가 아닌 **매국**입니다.